

초소형자동차 후미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2조제3호 관련)

1.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 방향

가) 1개가 설치된 경우 후미등의 기준점은 초소형자동차의 중앙 수직 종단면 내에 위치할 것

나) 2개가 설치된 경우 후미등의 기준점은 초소형자동차의 중앙 수직 종단면 내에 대칭으로 설치할 것

다) 후차축에 좌·우 양쪽에 바퀴를 가지고 있고 너비가 1,300밀리미터 초과인 경우 후미등 최외측과 차체 최외측 간 거리는 400밀리미터 이하일 것

2) 높이 방향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나. 관측각도

1) 후미등의 발광면은 상측 15도, 하측 1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만, 등화의 기준축이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발광면은 하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한다.

2) 1개가 설치된 경우 좌측 및 우측은 8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3) 2개가 설치된 경우 외측 80도, 내측 4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 조사 방향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후방일 것

라. 작동조건

차폭등, 번호등과 동시에 점등 및 소등되는 구조일 것

마. 표시장치

후미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비점멸식 녹색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계기판넬 내의 조명이 차폭등·번호등과 동시에 점등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광도는 별표 6의14 제2호에 따른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